

2012년부터 달라지는 환경행정

2012년 1월부터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실내공기질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이 추가되며,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석면안전관리법이 공포된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적용대상인 관리업체 지정기준이 강화되며, 수계로 배출되는 유해물질의 독성을 통합관리하여 건강한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도입된 「생태독성(TU)관리제도」가 3~5종 사업장까지 확대·시행된다. 2012년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환경행정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편집부 >

★ 환경정보 공개제도 도입

환경정보 공개제도가 도입되어 사회 전반에 자원·에너지 절약과 환경오염·온실가스 저감을 통해 녹색경영을 확산하기 위한 기반 마련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개정·시행

【 환경정보 공개제도 도입 】

주요내용 ① 행정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및 공기업, 온실가스 관리업체 등 환경영향이 큰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환경정보 공개제도를 도입

② 기업 및 기관의 특성에 따라 의무공개 항목과 자율공개 항목을 차별화

③ 제도 시행 초기임을 고려 유예기간을 설정

시 행 일 2012. 9. 30 / 환경부 녹색기술경제과(☎ 02-2110-6680)

★ 실내공기질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추가

2012년 1월 1일부터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필요성이 높은 시설을 법의 관리대상에 포함 >>> 실내공기질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추가

【 실내공기질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추가 】

주요내용 ① 영화관, 학원, 전시장, PC방을 법 적용대상에 추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다만,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온라인으로 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시 행 일 2012. 1. 1 / 환경부 생활환경과(☎ 02-2110-6815, 6909)

★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석면안전관리법」 공포

「석면안전관리법」은 기존의 개별 법령별로 분산·관리하고 있는 석면관리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강화하여 체계화하고, 중앙부처에서 전담하던 석면관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석면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 >>>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석면안전관리법」 공포

【 석면함유 사문석, 슬레이트 처리 등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석면안전관리법」 】

주요내용 ①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의 수입·제조·사용 등의 금지

② 사문석 등 석면함유기능물질 관리

③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

④ 건축물 석면조사, 석면지도 작성, 관리인 지정 등

시 행 일 2012. 4. 29 / 환경부 생활환경과(☎ 02-2110-7687)

★ 온실가스·에너지관리업체 지정기준 강화

2012년 1월 1일자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의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적용대상인 관리업체 지정기준 강화

>> 환경부 등 4개 중앙부처에 의해 지정된 업체는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을 감축한 뒤, 그 이듬해 온실가스 에너지 명세서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www.nir.me.go.kr)로 제출

* 부문별 관장기관 : 폐기물 등 환경산업(환경부), 산업발전(자식경제부), 건물교통(국토해양부), 식품·산업(농림수산식품부)

구 분	2011. 12. 31까지		2012. 1. 1 ~ 2013. 12. 31		2014. 1. 1 ~	
	업체기준	사업장기준	업체기준	사업장기준	업체기준	사업장기준
온실가스(tCO ₂)	125,000	25,000	87,500	20,000	50,000	15,000
에너지소비(TJ)	500	100	350	90	200	80

상세 문의 목표관리 헬프데스크(1577-8065) / 환경부 온실가스관리팀(☎ 02-509-7913)

★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규제제도 시행

2012년 1월 1일부터 국내에 10인승 이하의 승용·승합자동차를 판매하는 제작사(수입사 포함)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준수

>> 동 제도는 2012년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로 자동차 제작사(수입사 포함)는 한해 동안 판매하는 자동차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 제작사가 판매한 차량의 무게에 따라 정해지는 기준을 충족

환경부 교통환경과(☎ 02-2110-6808)

★ 저황유 공급·사용지역 확대 적용

2012년 1월 1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10의2]에 따라 저황유 공급·사용 대상지역 확대

>> 경기도의 동두천시, 양주시, 파주시 등 3개 지역이 중유 종 황 함유량 0.5% 이하 지역에서 황 함유량 0.3% 이하 지역으로 강화되고, 경기도 가평군 등 63개 시·군은 기존 황 함유량 1% 이하 지역에서 0.5% 이하 저황유 공급·사용지역으로 강화

>> 저황유 사용 사업장에서는 법정 사용기한인 2012년 1월 1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저황유로 교체·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02-2110-6776)

★ 「생태독성관리제도」 3~5종 사업장으로 확대·시행

수계로 배출되는 유해물질의 독성을 통합관리하여 건강한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도입된 「생태독성(TU) 관리제도」가 2012년부터 3~5종 사업장까지 확대·시행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 확대·시행】

주요내용 ① 3~5종 사업장까지 확대·시행(공공하·폐수처리시설 및 1~2종 사업장 : '11년부터 시행)

- * 석유화학시설 등 유해화학물질을 다종·다량 사용하는 35개 폐수배출시설 대상
- * 하·폐수종말처리시설로 폐수를 유입시키는 개별 사업장은 제외

② 규모별·지역별 적용기준 및 시기

구 分	지 역	기준(이하)	적용시기
공공 하·폐수 종말처리시설	-	TU1	
1, 2종 사업장	청 정 가, 나, 특례	TU1 TU2	2011. 1. 1 부터
3, 4, 5종 사업장	청 정 가, 나, 특례	TU2 TU1 TU2	2012. 1. 1 부터 2016. 1. 1 부터 2012. 1. 1 부터

② 부과금 및 행정처분

“생태독성”은 기본 및 초과배출부과금 대상이 아님

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 시 위반횟수가 2회차 이상인 경우 1단계 낮은 차수의 처분기준을 적용

시 행 일 2012.1. 1 /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02-2100-6846)

★ 하수도 사용료 등정보공개 제도 시행

2012년 4월 6일부터 「하수도법」의 개정·시행으로 공공하수도관리청에서 하수도 사용료가 정해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의 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및 전년도 집행실적으로 공고

【 하수도 사용료 등 공개정보 제도 시행 】

추진배경 하수도 처리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알권리 보장, 물절약 등 의식제고

주요내용 ❶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도 사용료가 정해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 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충당 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으로 공고하여야 함

시 행 일 2012. 4. 6 / 환경부 생활하수과(☎ 02-2110-6888)

★ 위생안전기준인증제도 시행

2011년 5월 26일 유해물질이 용출될 수 있는 수도용 제품의 제조·유통 및 사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시행

【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시행 】

주요내용 ❶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함(밸브류, 펌프류, 수도꼭지류, 유량계류 및 수도미터류)

시 행 일 2012. 5. 26 / 환경부 수도정책과(☎ 02-2110-6878)

★ 수도요금 등의납부방법 개선

개정 「수도법」이 2012년 1월 29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수도요금 및 원인자부담금 등을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을 이용하여 납부

【 수도요금 등의 납부방법 개선 】

추진배경 수도요금 납부방법 다양화를 통한 국민의 편의 제고

주요내용 ❶ 수도요금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방법 확대

시 행 일 2012. 1. 29 / 환경부 수도정책과(☎ 02-2110-6874)

★ 국가지질공원인증제도 도입

2012년 1월 29일부터 「지역공원법」의 개정·시행으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지질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국가지질공원 인증제도 도입

【 국가지질공원 제도 도입 】

추진배경 지질유산 보호 및 관광자원화를 위한 국가 지질자원관리체계 도입

주요내용 ❶ 자연공원에 지질공원 포함

❷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❸ 지질공원 해설·홍보·교육 전문 지질공원해설사 제도 도입

시 행 일 2012. 1. 29 / 환경부 자연자원과(☎ 02-2110-6744)

★ 야생동·식물 불법포획 처벌 강화

2012년 7월 22일부터 「야생동·식물보호법」의 개정·시행으로 밀렵 처벌 대폭 강화

【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 】

주요내용 ❶ 야생동을 밀렵 시 벌칙 강화[징역형만 부과, 징역형과 벌금 병과]

시 행 일 2012. 7. 29 / 환경부 자연자원과(☎ 02-2110-6757)

★ 사전환경성검토와환경영향평가의 통합

2012년 7월 22일부터 「환경영향평가법」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되므로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가 같은 법 안에서 운영

【 환경영향평가법 주요 개정내용 】

- 주요내용**
- ❶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법체계 일원화
 - ❷ 환경영향평가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세분화
 - ❸ 평가 관련 위원회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로 통합·운영
 - ❹ 행정계획을 성격에 따라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구분
 - ❺ 주민 요구 시 공청회 개최, 주민의견 재수렴 및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여부를 공개
 - ❻ 전략환경영향평가(구. 사전환경성검토)서의 환경영향평가대행업자 작성토록 규정
 - ❼ 환경영향평가사제도와 자연생태조사·평가업을 신설

시 행 일 2012. 7. 22 /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2-2110-7613)

★ 버린 만큼 수수료 납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10. 2. 3, 녹색위)에 의하여, 금년 말까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납부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본격 시행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본격 시행 】

- 주요내용** 분리배출 대상 지자체(144개 시·구)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 ❶ '음식물류폐기물 조례 준칙' 개정('10. 12월)
 - ❷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제정('10. 8월)
 - ❸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추진('11. 11월, 10개 지자체)

시 행 일 2012. 12월말까지[지자체별로 단계별 시행]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2-2110-6936)

★ 소형가전제품분리배출제 도입

2012년 11월 10일부터 「재활용기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휴대폰, 카메라 등 소형 가전제품의 분리 배출제 도입

【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제 도입 】

- 추진배경** 소형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수거체계 개선 필요
플라스틱류 등과 혼합배출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투입되어 대부분 소각·매립처리되어 금속 등 유가자원이 버려지는 상황
- 주요내용** 소형 폐전기·전자제품 분리배출제 도입
재활용기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11. 11월)
- 시 행 일** 2012. 11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2-2110-6953)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평가의 활성화 추진

생활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적정처리평가 및 대행업체간 경쟁력 유도를 위해 수집·운반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해 매년 1회 평가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대행업체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평가부진 대행 업체는 입찰제한 등 패널티 부여

* 2011년 6월 22일 기준을 마련 지자체에 시달. 지자체는 동 기준을 근거로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2012년부터 시행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평가기준 마련 】

- 추진배경** 수집운반 평가기준을 마련, 수집운반 대행의 능률성, 경쟁력 제고
- 주요내용**
- ❶ 평가회수 : 년 1회 실시
 - ❷ 평가내용 : 바른 수거, 시민편의 배려, 불만사항 신속대응, 인력 장비활용 등
 - ❸ 평가방법 : 주민 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 등 3단계로 평가
- 시 행 일** 2011. 7. 23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2-2110-6937)